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2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박성훈 · 김기현 · 이달희
이헌승 · 김성원 · 이인선
송언석 · 김기웅 · 고동진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생략)</p> <p><u><신설></u></p> <p>② ~ ⑤ (생략)</p>	<p>제34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① (현행과 같음)</p> <p><u>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p>